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부(父)계 태아산재 인정 등 〉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29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7

I. 제안경위

2024년 7월 9일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손상자녀”를 규정함에 있어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돼 부(父)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의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자녀가 앓고 있는 선천성 질병에 대해, 아빠와 태아 산재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했음에도 남성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이 되지 못한 바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1조의12).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유해인자 등의 취급 또는 노출 등으로 ‘근로자’의 ‘출생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출생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u>임신 중인 근로자</u>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u>출산한 자녀</u> 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u>출산한 자녀</u> (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u>근로자</u> ----- ----- ----- ----- <u>해당</u> <u>근로자의 출생 자녀</u> ----- ----- ----- ----- <u>출생 자녀</u> ----- -----

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u>임신한 근로자</u>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 ----- -----<u>근로자</u>-----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①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거나 임신 중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경우로서 ②그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산재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를 두고 있음.¹⁾

현행법은 자녀의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구성하면서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는 자의 범위를 여성 근로자로 한정하고,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된 시기를 임신 중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남성의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녀의 부상, 질병, 장애

1)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발생, 사망 등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음.

특히, 2024. 7.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부친의 유해인자 노출 등에 따라 자녀의 선천성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²⁾ 근로복지공단은 법률상 부친의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인한 자녀의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는바,³⁾ 부(父)계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에 대하여도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임.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의 유해인자 취급·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출산 이전부터 유해인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출산 이후 수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 자녀에 대한 산업재해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부모의 유해요인 취급 등에 따라 산업재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의 자녀를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부(父)계에 의한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해외 사례(독일, 덴마크, 미국 등)도 없는 상황으로,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업무관련성 역학조사는 업무와 질병간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음.

3) 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2024. 9.)

연구용역 등 추가적인 의학적·과학적 검토를 거쳐 개정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 역학조사 주요 내용

- ▶ **작업환경에서 생식세포의 변이원성 노출로 인해 자녀의 염색체 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기형을 일으키는 개별적인 유해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전무**
- ▶ 유럽집행위원회의 화학물질 분류기준도 **생식세포 돌연변이 유전성에 대한 Group1A 수준*의 유해인자는 보고되지 않음**

* 인간 발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인간 사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물질